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

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05
----------	-----

2023. 6. 23.(금)  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박지현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3년 5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6월 13일

-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지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물 수요 관리 목표제를 실시하고, 「수도법」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 외에 절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절수설비의 설치를 지원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실시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### 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세계 기후변화와 이상고온 현상에 따라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충청도민의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생활화하고 이를 통한 절수와 효율적인 수자원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며,
- 2001년 이후 환경부가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신축건물 및 물 사용이 많은 업종에 대하여 절수설비(기기)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,

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이에 대한 관련 사업을 종합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규정하여 절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절수설비 등을 지원 촉진 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**참 고**

우리 도를 제외한 전국 12개 시·도에서 유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.

시·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
제정일	-	-	22.12.30	20.11.9	23.2.23	-	23.4.6	17.9.29
시·도	경기	강원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제정일	20.7.15	19.1.4	17.9.20	20.5.29	20.8.6	-	17.8.3	17.12.29

**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**

- 본 조례안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물 수요 관리 목표제를 실시하고,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충청도에서도 2010년부터 수도법을 근거로 공중화장실, 숙박·목욕장·체육시설 등에서 절수설비(기기) 등 설치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음.

**참 고**

- **절수설비** : 별도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변기 및 수도꼭지
- **절수기기** :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변기나 수도꼭지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

○ **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**

- 안 제4조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 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시·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- 안 제5조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수도법 제 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 - 안 제6조는 물 절약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, 우수 사례 발굴, 도민참여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그 밖의 조문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  - 조례안 예고('23. 6. 2. ~ 6. 8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####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본 조례안은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,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문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.

#### 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행정·재정적인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충청도민의 수돗물 절약과 절수 습관을 생활화하고 더 나아가 수자원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

되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다만 조례제정 이후 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종합적인 관리 역할 및 수도사업자의 행정·재정적인 지원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」

# 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 (박지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0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5월 31일  
발 의 자 : 박지현, 이동우, 김종필,  
김호경, 박진희, 변종오,  
유재목

## 1. 제안이유

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물 수요 관리 목표제를 실시하고, 「수도법」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 외에 절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절수설비의 설치를 지원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실시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라.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마. 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- 다. 협의 :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수자원관리과
- 라. 조례안 예고 : 2023. 6. 2. ~ 6. 8. (의회홈페이지 게시 및 예고)

## 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수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른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)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시·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·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정책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5조(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)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조(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) ① 도지사는 물 절약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
2.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
3.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도민참여 활성화
4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

### □ 수도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5. 25., 2011. 7. 28., 2011. 11. 14., 2013. 3. 23., 2013. 12. 30., 2018. 6. 8., 2019. 11. 26., 2020. 3. 31., 2020. 5. 26.>

1. ~30. (생략)

31. “절수설비” (節水設備)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·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.

32. “절수기기”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.

33. (생략)

제6조(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) ① 시·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8. 6. 8.>

②~④ (생략)

# 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수돗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 지원
- 물 절약 문화의 확산을 위한 위탁 교육기관 지원 및 사업 추진

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 지원
- 물 절약 문화 위탁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
- 물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

## 3. 관련조문

- 조례안 제5조(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)
- 조례안 제6조(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)

## 4. 비용 추계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 5년간으로 함
- 추계기간(5년간)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
- 물가상승,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
- 조례안 제5조, 제6조, 제8조에 의거 절수설비 설치 지원, 물 절약 문화 관련 위탁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지원 및 물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비용 추계

### 나. 추계 결과 : 2024년부터 향후 5년간 70,000만원(14,000만원/년)

-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 지원 : 13,000만원/년
  - 절수설비 설치 지원 : 13,000만원×1식 = 13,000만원
  - ※ 청주시 : 2,000만원, 충주시·제천시 : 1,500만원, 보은군 등 9개군 : 1,000만원
    - 산출근거(절수형 샤워꼭지 기준)

- 청주시 : 2만원/개 × 1,000개 = 2,000만원
- 충주시·제천시 : 2만원/개 × 750개 = 1,500만원
- 보은군 등 9개군 : 2만원/개 × 500개 = 1,000만원

※ **재원조달방안 : 도비, 시군비(도 30%, 시군 70%)**

- 물 절약 문화 확산사업 추진 : 1,000만원/년
  - 물 절약 문화 교육 실시 : 800만원×1회 = 800만원
  - 물 절약 문화 홍보(홍보물 제작·배포) : 200만원×1식 = 200만원

※ **재원조달방안 : 도비(도 100%)**

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 : 만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계
세 입							
세 출		14,000	14,000	14,000	14,000	14,000	70,000
절수설비 설치지원		13,000	13,000	13,000	13,000	13,000	65,000
물절약문화 확산사업		1,000	1,000	1,000	1,000	1,000	5,000
<b>재원 조달</b>		<b>14,000</b>	<b>14,000</b>	<b>14,000</b>	<b>14,000</b>	<b>14,000</b>	<b>70,000</b>
자체 수입	소 계	4,900	4,900	4,900	4,900	4,900	24,500
	지방세	4,900	4,900	4,900	4,900	4,900	24,500
	세외수입	-	-	-	-	-	-
지방채		-	-	-	-	-	-
기 금		-	-	-	-	-	-
시·군비		9,100	9,100	9,100	9,100	9,100	45,500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-	-	-	-	-	-